

《앞면》

이사물품 반입내역서

처리기간
즉시

이 사 자	①성명	②국적		한국(비영주권자, 영주권자), 외국인()		
	③직업	④여권번호	⑤생년월일			
	⑥주소	해외(국가·도시명) :		⑦국내전화번호 (휴대전화)		
		국내(자세히):		⑧E-mail	@	
	⑨거주(예정)기간(내국인은 외국에 거주한 기간, 외국인·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 할 기간) : ~ * 거주(예정)기간에 따라 아래의 해당란 □에 "V"표시 하시기 바랍니다. □개인 1년 이상(이사자) □가족동반 6월 이상(이사자) □개인 3월~1년 미만(단기체류자) □가족동반 3월~6월 미만(단기체류자)					

동 반 가 족	⑩성명	⑪이사자와의 관계	⑫생년월일	⑬여권번호	⑭직업	⑮거주기간

운 송 내 역	⑯선적항(국가)	⑰B/L(house) No			
	⑱운송의뢰일/국내도착일	/	⑳운송회사 (Forwarder)	해외	
	㉑운입			국내	

*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□에 "V"표시하시기 바라며, 뒷면에 신고대상물품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㉒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? 있음 없음

1. 총포·도검·석궁 등 무기류·실탄 및 화약류·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(모의총포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2. 아편·헤로인·코카인·히로뽕·MDMA·대마 등 마약류,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3. 동물(고기, 가죽 털 포함)·식물·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식품류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4.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(호랑이, 코브라, 거북, 악어, 산호, 웅담, 사향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5.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,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6.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,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7. 신고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도착한 물품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8.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, 감청설비,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이 반입내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

- 붙임서류 :
- 필요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또는 재외영주권 1부
 -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
 - 필요시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(영주권자만 해당) 또는 비자 사본 1부(외국인에 한함)
 - Packing List(포장명세서) 1부
 - 선하증권(B/L) 또는 화물운송장(Airway Bill) 사본 1부
 -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1부
 -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(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)

《뒷면》

신고대상 물품 내역							
품 명	포장 번호	상표명	모델·규격	수량	구입가격 (US\$)	사용 월수	※ 세관 기재란
1. 신품 또는 입국하기 3개월 미만 사용물품							
2. 보석, 진주, 별갑, 산호, 호박,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							
3. 상업용 물품, 직업과 관계없는 물품							
4. 그 밖에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							
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 신고							
차 명		차대번호		배기량	cc	연 식	
제조국		승차정원	최초/본인명의 등록일자	/			

- ※ 세관기재란은 기재하지 마시고, 사용월수란에는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시고,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은 빈칸에 기재하십시오.
- ※ 현품검사 입회시 물품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공무원에게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3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3월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신고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 납부 세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되며,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